# 공직선거법위반

[서울고등법원 2011. 1. 27. 2010노3324]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항 소 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정용수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조승범 외 1인

【원심판결】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고합1394 판결

## 【주문】

1

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.

## [이유]

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가. 법리오해 내지는 사실오인

피고인이 자신이 감사로 재직 중인 한국관광공사 직원들에게 공소외 1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, 당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피고인의 집무실인 감사실에서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일 뿐, 당시 그부탁의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내용에 불과하였고, 감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이용하여 부탁하거나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요구하여 그 이행 여부에 따라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암시를 주는 등 직무상행위를 이용한 사실은 없다.

그럼에도 피고인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.

나. 양형부당

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(벌금 150만 원)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## 2. 판단

가. 피고인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

1)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전문은 "누구든지 교육적·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·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"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, 여기서 '직업적인 기관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'라 함은 '직업적인 조직 내에서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'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) 그런데,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① 한국관광공사의 감 사는 감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서류·장부·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,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,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, 그와 같은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해야 하며, 감사 결과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,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, 관계 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,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바, 한국관광공사의 감사인 피고인은 한국관광공사의 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 었던 점, ② 한국관광공사의 직원인 공소외 2, 3, 4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피고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, 피고인의 비서인 공소외 5로부터 감사인 피고인이 부른다는 말을 듣고 한국관광공사 감사실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 난 점, ③ 위 공소외 2, 3, 4는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어, 위 공소외 2, 3, 4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로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피고인은 2010. 7. 19.경 위 공소외 5에게 공 소외 1 후보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한국관광공사 직원 8~9명 정도의 인사기록카드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, 위 공 소외 2, 4와 이야기할 때 위 인사기록카드를 보기도 하였던 점, ⑤ 위 공소외 2, 4는 피고인이 감사라는 지위에 있 었기 때문에 당황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1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도 하지 못 하고 감사실을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, 피고인은 직업적인 조직인 한국관광공사 내에서 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위 공소외 2, 3, 4에게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된 행위에 편승하여 공소외 1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
- 3) 따라서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,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,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#### 나.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인이 공소외 1 후보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, 피고인이 선거 운동을 한 직원이 3명으로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,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.

그러나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전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한국관광공사의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 동을 한 점,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대상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다음에, 그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, 이는 위 직원들의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, 기타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보면,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아니하므로,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## 3. 결론

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,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상철(재판장) 박범석 전우진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